



# 국가인권위원회공보

국가인권위원회

2020년 4월 15일

제 18권 제 2호

## 알 릫

- 국가인권위원회공보는 당사자(진정인, 피해자, 피진정인) 및 관계인의 인격권을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들의 이름, 소속기관, 주소 등을 익명으로 처리하고, 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결정문의 일부를 수정 또는 삭제함을 알려드립니다.
- 현재까지 발간된 공보는 그 전문이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(<http://www.humanrights.go.kr>)에 게재되고 있으므로, 널리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 - 목 차 -

### 공 지 사 항

1	인사발령 등 .....	265
2	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주요 동정 .....	269
3	진정접수 · 상담 · 민원 · 안내 처리 현황 .....	272
4	진정사건 처리 현황 .....	274

<b>법령 · 정책 등 권고결정 및 의견표명</b>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**1 2019. 10. 28.자 결정 【피의자 국선변호인제도 도입 방향에 대한 의견표명】** ..... 287

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에게, 피의자 국선변호인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적용대상과 범위를 '체포된 모든 피의자'로 하되, 미성년자, 정신적 장애인, 시·청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로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체포 여부와 관련 없이 모두 적용하고, 제도 운영과 운영주체에 있어서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「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」과 「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」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

**2 2019. 10. 29.자 결정 【불기소사건기록 열람·등사 관련 법령에 관한 의견표명 및 정책권고】** ..... 298

- [1] 국회의장에게, 불기소사건기록 열람·등사의 신청권자와 신청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「형사소송법」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
- [2] 법무부장관에게, 「형사소송법」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·등사 신청범위를 과도하게 제한한 「검찰보존사무규칙」 제20조의2를 신속히 개정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

**3 2019. 11. 25.자 결정 【정치인의 혐오표현 예방·대응 의견표명】** ..... 315

- [1] 국회의장에게, 혐오표현 자정과 예방의 의지를 천명하는 입장표명이나 선언을 추진하고, 「국회의원윤리강령」이나 「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」 등에 혐오표현 예방·대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,
- [2] 각 정당대표에게, 혐오표현 예방과 대응을 약속하는 선언을 추진하고 선거과정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며, 정당의 윤리규정에 혐오표현 예방과 금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, 정당 구성원을 대상으로 혐오표현과 차별 예방교육을 실시하고,
- [3]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, 정치인의 혐오표현 자정을 유도하는 입장표명 등, 선거과정에서 후보자들이 혐오표현을 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강구하기 바람.

**4 2019. 12. 20.자 결정 【경찰청 운용차량 내 영상녹화장비 관련 정책권고】** ..... 330

경찰청장에게, 피의자 인권보호와 범집행 투명성 확보를 위해 경찰청 운용차량 내 영상녹화장비와 관련하여 보유기간 등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, 영상녹화장비 운영취지를 실현할 수 있는 단계적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

**5 2020. 2. 17.자 결정 【공항 터미널 내 장기체류하게 되는 난민신청 이동의 인권보호를 위한 의견표명】 ..... 345**

법무부장관에게, 난민신청심사 불회부 결정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 등으로 그 처분의 정당성을 다투는 사람이 아동인 경우, 난민신청이 명백히 남용적인 것이 아닌 한 해당 기간 중 기본적 처우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, 아동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입국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

**인권침해행위 조사결정**

**1 2020. 1. 22.자 결정 19진정0088400 【경찰의 과도한 장구사용과 폭행 등】 .... 361**  
 ○○○○경찰서장에게, 피진정인 1에 대하여 경고조치할 것과, 피진정인 2에 대하여 징계할 것을 권고

**2 2020. 2. 17.자 결정 18진정0545600 【근로감독관의 과도한 수갑 사용】 .... 369**  
 고용노동부장관에게, 피진정인 1에 대하여 경찰장구 사용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과, 근로감독관의 수갑 사용과 관련한 인권침해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각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사례전파할 것을 권고

**3 2020. 2. 19.자 결정 19진정0859700 【장애인 촬영 동영상 무단 전송에 의한 인권침해】 ..... 381**  
 시설장에게, 피진정인들이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동영상을 촬영하고 그 촬영된 동영상을 제삼자에게 무단 전송하여 피해자들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,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주의 조치하고, 그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

**차별행위 조사결정**

**1 2020. 2. 19.자 결정 18진정0863200 【정신병원 과도한 격리 및 편의제공 미흡 등】 ..... 392**

- 【1】 피진정인에게, 격리실 운영 및 격리 시행에 있어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75조 및 보건복지부 『정신건강사업안내』의 「격리 및 강박지침」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피진정인 포함하여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 교육을 포함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, 입원환자에게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
- 【2】 관할 구청장에게, 관내 정신의료기관에서 입원환자들에 대한 부당한 격리로 인한 인권침해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·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

**2** 2020. 1. 22자 결정 19진정0957300 【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의 혼인신고 전 출생자녀 불인정】 ..... 405

국토교통부장관에게, 신혼부부 주택특별공급 제1순위 자격요건을 정할 때 혼인신고 이전에 출산한 자녀를 일률적으로 배제하지 않도록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을 개정할 것을 권고

**3** 2020. 1. 22자 결정 19진정0383000 【가족의 종교를 이유로 한 대학교수 승진 거부】 ..... 414

○○○○대학교 이사장에게, “○○○○○○○○교(○○)에서 전 가족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자는 부교수 이상 승진·임용할 수 없다”는 「교원인사규정」을 개정할 것을 권고

**4** 2020. 2. 26자 결정 19진정0864500 【공사의 운전원 채용 시 과도한 자격 제한으로 인한 고용 차별】 ..... 421

- 【1】 피진정인에게, 운전원 채용 응시자격을 정함에 있어 과도한 자격 제한으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사유와 관련된 합리적인 기준을 반영하여 응시자격을 개선할 것을 권고
- 【2】 □□시장에게, 피진정공사를 비롯한 협력기관의 채용과정에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·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

**인권도서관 신착자료**

**1** 국내서 단행본 ..... 428